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76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비핵심업무 민간이양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국토연구원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함(안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화 : 044-201-3410, 3400 / 팩스 : 044-201-5538